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63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(2023. 7. 27. ~ 2023. 8. 16.) 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액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변경(안 제4조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5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29조의2 및 제31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2배”를 “5배”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표 6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 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	행
	<p>제4조(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)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(부정수령액을 말한다)과 가산징수금액(부정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)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5조(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.</p> <p>1.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“정부구매카드”의 경우: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표 6의 “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”로 봄</p> <p>2. ~ 8. (생략)</p>

**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과 인사팀 임준혁
연 락 처	2627 - 1016

현행 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상시출장여비(이하 "월액여비"라 한다)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.
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여비의 지급 구분) ①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.

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

제4조(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)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(부정수령액을 말한다)과 가산징수금액(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)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.

제5조(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.

-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"정부구매페카드는"의 경우: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표 6의 "지방자치단체구매페카드는"로 봄
- 영 제17조, 영 제22조,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 중 "소속 장관"의 경우: "구청장"으로 봄
-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"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"의 경우: 없는 것으로 봄
-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"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"의 경우: "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"로 봄
- 영 제24조제5항 중 "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"의 경우: "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"으로 봄
- 영 제27조 및 영 제29조제3항의 경우: 미준용
- 영 제29조제1항 중 "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"와 같은 조 제2항 중 "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" 및 같은 조 제4항 중 "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"의 경우: 없는 것으로 봄
-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의 경우
 - 가. "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"의 경우: "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"으로 봄
 - 나. "「공무원보수규정」"의 경우: "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"으로 봄

관계 법령

공무원 여비 규정

- 제31조(가산징수 등)**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

- 제13조(세출예산 집행 기준)**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 2.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